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법령적합성

-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

□ 내용적합성

-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감축되는 인원은 현원에서 70명이며 감축되는 인원의 산정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것임.
70명 감축의 구체적인 방안과 업무이관에 따른 과원 발생시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-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고(기존의 8명) 새로 5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미배치된 읍·면·동에 배치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라 생각됨. (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인원 승인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 승인사항)